IBK상생결제론

(2015.4월 현재)



대 · 중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2 · 3 · 4차 협력기업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출상품

- 대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(플러스전자어음)을 근거로 1 · 2 · 3차 협력기업은 하위 협력기업에게 동일 조건의 매출채권 발행
- 2 · 3 · 4차 협력기업은 해당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대기업의 신용도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, 대기업이 대금 결제 시 당해 대출 자동상환

이런 점이 좋습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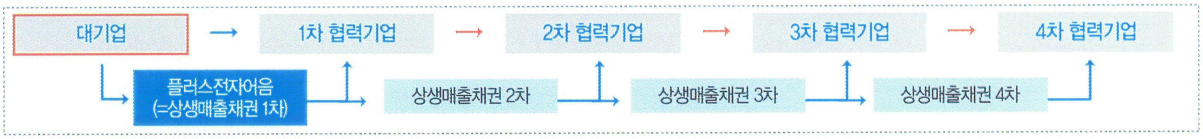
- 거래편의 : 대기업의 결제자금으로 2 · 3 · 4차 협력기업 채권 자동 결제
- 안심결제 : 대기업의 자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보다 안전하게 결제가능
- 비용절감 : 외상매출채권 할인료 절감

지원대상

- 주거래기업(대기업) : 플러스전자어음 발행 기업 중 당행과 "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" 을 체결한 기업
- 협력기업 :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주거래기업으로부터 플러스전자어음을 수취한 1차 협력기업과 그 하위기업인 2 · 3 · 4 차업 협력기업

채권종류

- 플러스전자어음 :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주거래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발행한 매출채권
- 상생매출채권(n차) : (n-1)차 협력기업이 상위채권을 근거로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n차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매출채권 ※ n은 2,3,4만 가능



상생매출채권 발행

※ 상생매출채권 발행 관련 문의는 MP 고객센터(02.703.888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		
금 액	(ⓐ – ⓑ – ⓒ) 범위 내 (최소 100만원) / ⓐ 상위채권 건별 금액 ⓑ 상위채권 기 할인금액 ⓒ 상위채권을 근거로 한 상생매출채권 기 발행금액		
종 류	상생매출채권 (2차), 상생매출채권 (3차), 상생매출채권 (4차)	만 기 일	상위채권 만기일 이후로 하며 발행일로부터 180일 범위 내
발행방법	MP사이트를 통해 발행 (http://ibk.kefci.com)	기 타	상위채권 만기일에 상생매출채권 발행 불가

상생매출채권 할인

<할인방법>

구 분	내 용		
지원대상	상생매출채권을 보유한 기업	할인한도	제한없음 ※ 단, 주거래기업의 플러스전자어음 할인한도 범위 내로 자동제어
할인금액	(ⓐ – ⓑ – ⓒ) 범위 내 (최소 100만원) / ⓐ 상생매출채권 건별금액 ⓑ 상생매출채권 기 할인금액 ⓒ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한 하위채권 기 발행금액		
할인금리	대기업 협약금리에 따름	수 수 료	할인금액에서 MP사 수수료 0.1%

<상환청구권> 상생매출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해당 상생매출채권을 기 할인한 협력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, 해당 상생매출채권을 기 할인한 협력기업의 연체로 관리하지 않음

※ 단, 상생매출채권이 계약불이행, 이중양도 등 협력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에게 상환청구권 행사

상생매출채권 결제

플러스전자어음 만기 시

- 대기업의 결제자금으로 플러스전자어음 및 하위 상생매출채권(2 · 3 · 4 차)의 기 할인금액 상환
- 1차 협력기업 수취금액*을 입금계좌에 입금 * 수취금액 : '수취한 상생매출채권 건별 금액' – '상생매출채권 기 할인금액' – '하위채권 기 발행금액'
- 2 · 3 · 4 차 협력기업 수취금액을 상생결제계좌에 입금

상생매출채권(n차) 만기 시

상생매출채권(n차) 금액을 상생결제계좌에서 출금하여 n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 (n은 2,3,4)

상생결제계좌란? 플러스전자어음의 결제대금을 수취한 후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에 자동결제 '대 · 중소기업협력재단' 명의의 계좌

대출 및 제출서류 문의

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-859호 (2015.04.07) YE270 게시기한 : 2015.07.31

·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,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 됩니다. ·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(☎1566-2566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·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(금융감독원 : 국번없이 ☎1332, IBK기업은행 : 080-800-0119) · IBK기업은행은 금품 ·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.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(☎02-729-7490, e-mail : ibkethics@ibk.co.kr)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